

[공개] 2022학년도 내부감사(중점감사) 보고서

(‘22.12.05, 법무감사팀)

□ 내부감사(중점감사) 개요

- (감사대상) 학사행정, 교직원 인사·복무 관련 행정부서
- (감사대상기간) 2019학년도 ~ 2021학년도
- (감사기간) 2022. 11. 14. ~ 11. 17.
※ 감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연장 가능
-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인사발령에 따름

□ 주요 감사내용

- 학사행정
 - 교육과정 운영, 수업 운영
 - 성적평가의 적정여부, 학사경고자 지도
 -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 교육혁신 지원
 - 교수법, 학습법 연구 및 개발, 교육, 평가, 상담 지원, 기자재 관리
- 교직원 인사·복무
 - 교원인사, 직원인사
 - 복무관리 상태(근태, 교외활동), 개인정보보호

□ 감사결과(요약)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
교무연구처	부서경고 1	개선 6 통보 16	-
기획평가처	부서경고 1	개선 1 통보 2	-
행정지원처	-	통보 2	-
합계	부서경고 2	개선 7, 통보 20	-

□ 감사 종합의견

본교 학사행정과 교직원 인사·복무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이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분장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였다고 판단되며, 중점감사의 대상 중 교직원 인사,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 상당부분이 기존 내부감사 혹은 교육부 점검 등으로 감사 혹은 감사에 준하는 점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제한된 예산 내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운용이 대체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교 교육과정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교과과정정책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변경된 이후 구체적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고 교과과정 정책에 대한 연구나 정책이 수립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혁신센터의 정책연구결과 상정 정례화 및 의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센터 전문연구인력의 확충·보완이 필요하며, 학내 사정으로 부득이 소속 교원을 정책연구전담자로 배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성과 보상 및 지속가능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과의 전공필수, 전공선택에 대한 교육과정 개선과는 달리 교양교과목의 경우, 학생 및 사회 수요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과목으로 선택을 위한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수업계획서가 기간 내 입력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수업 모니터링의 경우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일부 후속조치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과편람이 기간 내 입력되지 않아 교과목 개설이 지연되는 등 장애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부 교원은 보직을 수행하기 위해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준칙에 따라 시수가 감면되었으나, 도리어 과도하게 많은 시수를 맡아 보직교수에 대한 시수감면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 수업이행의 적절하지 않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교양학부 소속 교원이 보직발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시수인 12시수에서 1시수를 차감한 11시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에서는 원장, 부속부설기관장(부소장 포함), 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의 경우 8시수 적용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실질 적용과 상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적변동 절차 중 제출기한 및 처리기한이 부재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승인완료일에 대한 예측이 불가함을 확인하였고, 학사경고자에 대한 지도교수 면담 시행이 미흡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환류관리·결과활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자재에 대한 홍보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수법, 학습법 연구 및 개발, 교육에 많은 대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며, 해당 결과물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공유가 필요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교직원 인사·복무와 관련하여,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할 때 인사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일부 절차가 미시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복무관리는 일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지게 규정(교원 준칙)되어 있고, 겸직·사외이사·해외여행 등 총장 허가를 요하는 경우, 본인의 신고 외에는 확인·점검이 전무하였습니다. 직원의 복무관리는 근태관리시스템으로 출퇴근 기록이 누적되고 있지만 근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점검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사립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과 정보보안 수준진단을 시행하고 있어 해당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를 진행,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중점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당해 부서와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학사행정을 수행하고 교직원 인사·복무를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지원 노력과 더불어 각 행정부서의 개선 노력을 기대합니다.

☐ 모범 교직원 또는 부서 : 미 실시

□ 처분

- 경고(2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징계를 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번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처분
1	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 결격 사유 조회 등 미 실시	교원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성범죄경력 등의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용한 바 있음	<부서경고> 00팀
2	직원 신규 채용 시 임용 결격 사유 조회 등 미 실시	직원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검증 조사를 수행해야함에도, 성범죄경력 등의 검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용한 바 있으며 채용 후 교육부 요청에 의한 점검을 통해 성범죄자가 채용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되었으나,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부서경고> 00팀

- 개선(8건,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1	00팀	수업 계획서 (강의계획서) 전 산 입력 기 간 미준수	-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제2항 ‘아.’의 ‘2)’ 호 내지 ‘6)’ 에 근거하여 수업담당교수는 교무연구처(수업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 필수 입력항목을 포함한 수업계획서(강의계획서)를 입력하고 중간평가와 기말평가 후 각각 중간개선사항과 학기말 수업운영 상의 총평, 개선할 사항을 입력·작성하여야 하는데도, - 감사 대상기간인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총 6개 학기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수업계획서(강의계획서) 입력현황을 점검한 결과, 수업계획서(강의계획서) 자체 혹은 중간개선사항과 총평 등을 각 지정기간 내 입력하지 않는 등 세부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개선> - 수업의 질 향상 및 학사운영관리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제도적 조치 필요 ※ 결과보고서 상의 ‘시정 개선 또는 건의 사항’ 참조
2	00팀	수업 관리의 엄정성 확보 를 위한 수 업 운영 점 검 후속조치 미흡	- 수업팀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사 운용 관리, 수업 점검 피드백을 통한 교원의 복무체계 확립, 교육 만족도 제공 등을 위해 매 학기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제14항에 근거하여 학기별, 강좌별 모니터링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음 - 특히, 2020학년도 1학기 이후 코로나 확산 및 교육부 권고 조치에 따라 ‘학사운영(온라인 수업) 지침 안내’ 를 배포하여 펜데믹 상황에서의 엄정한 수업관리를 위해 소속교원에 대한 사전안내 등의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 - 다만, 감사 대상 기간인 2019~2021학년도 중 이 행된 각 학기별 모니터링(수업점검) 결과에 기초하여 대상 학과(전공) 및 교원에 대한 개선·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선·보완 실적을 확인할 수 없음	<개선> -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 및 재발 방지, 수업관리의 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환류체계 및 제재조치) 마련 필요 ※ 결과보고서 상의 ‘시정 개선 또는 건의 사항’ 참조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3	00팀	전임교원 중 보직교수 기 본 책임시수 적용 부적정	- 본교 「교원준칙」 제3조(전임교원의 기본 책임 시간에 따르면 1) 학과(전공)소속 교원의 책임시수는 9시간 2) 피어선칼리지 소속 교원의 책임시수는 12시간(개별계약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음) 3) 연구교원의 책임시수는 6시간 4)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6시간 5) 국제교류중점교원의 책임시수는 6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운영하도록 하고, 전임교원으로서 교수기준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 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매월 정산·지급하되 책임시간 수에 미달하거나 휴강시간 수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 교무위원 및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교원의 교수시간은 주당 5시간, 원장, 부속부설기관장(부소장 포함), 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의 교수시간은 주당 8시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혹은 대학기관인증평가 등 대외 평가에서 주요지표로 요구되고 있는 ‘전임교원 강의담당시수’ 확충과 본교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전임교원의 강의담당 시수 증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으로서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활동은 물론 보직교원으로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시수감면을 적용하여 주는 것인데도, - 보직발령을 사유로 시수감면을 받은 상황에서 기본시수 대비 7.0~18.5 이르는 시수를 초과하여 강의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 2개 학기에 걸쳐 ‘1학점당 수업시수 미준수’, ‘동일 영상으로 다른 두 강좌 2주간 운영’, ‘동영상 강의 기준시간 미충족’의 사유로 민원 제기된 보직교수에 대하여 ‘교원 경고조치 및 보충 수업 진행’, ‘교무연구처장 면담을 통한 주의 조치’를 취할 뿐, 동일·유사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개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후속조치 ※ 보직교원으로써 시수감면 받은 기준시수 이상의 시수를 맡을 수 있으나, 보직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시수 배정으로 부정적 영향의 시수 운영 사례 발생시, 취지에 준한 시수감면 조치는 물론 방지차원의 보완적 제재조치 필요 ※ 교양학부 소속 교원이 보직발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시수인 12시수에서 1시수를 차감한 11시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에서는 원장, 부속부설기관장(부소장 포함), 학부장, 학과장, 주임교수의 경우 8시수 적용을 원칙으로 두고 있어 상충하고 있음 예시 : 시수감면 받은 보직교수 강의시수 상한선 마련(초과시수 허용이 불가피한 경우, 보직발령 이전 책임시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4	OO팀	학과편람 전 산입력 미흡	- 수업팀에서는 2019학년을 기점으로 당초 오프라인 서류로 제출 받았던 각 학과(전공)별 편람을 통합시스템 도입 이후 본교 통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 감사 대상 기간인 2019~2021학년도 각 학과(전공)별 학과편람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업팀이 지정한 학과편람등록기간을 도과하여 등록하거나 미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교과목 개설 등 후속조치에 장애요인(교과목 개설 지연)으로 작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 - 특히, 2019학년도의 경우 통합시스템 개발 도입 과정으로 논의하더라도 2020학년도 4개 학과, 2021학년도 8개 학과가 미등록	<개선> - 전담부서인 수업팀에서 학사일정에 따라 시행기간 내 통합정보시스템에 학과편람이 입력되게 학사업무 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행정체제 구축 필요
5	OO팀	교원 신규채 용 시 임용 결격사유 조 회 등 미실 시	교원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성범죄경력 등의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용한 바 있음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므로 신규 이용기관 등록 및 사용을 권고함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6	00팀	교원 복무 점검 미실시	교원 준칙 제2조(출근일 준수), 교원 준칙 제4조(국내외 여행), 교원인사규정 제48조(검직)에 대한 준수여부의 확인·점검 미실시	<개선> 현행 교원준칙 제2조(출근일 준수)에 따라 모든 전임교원은 주4일 이상 출근해야 하는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여 교원 준칙 제1조(목적)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복무관리규정이 개정하도록 권고
7	00팀	직원 신규 채용 시 임 용 결격사유 조치 등 미 실시	직원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검증 조사를 수행해야함에도, 성범죄경력 등의 검증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용한 바 있으며 채용 후 교육부 요청에 의한 점검을 통해 성범죄자가 채용되지 않았음이 확인이 되었으나,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치가 가능하므로 신규 이용기관 등록 및 사용을 권고함

- 통보(20건,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 개선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1	00팀	교육과정정책위원회 역할 미흡	- 학부의 교육과정 설치 관리(개편)는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2조 내지 제8조와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고, 내규 제8조 제2항과 지침에 따라 운영주체인 대학 구성원은 물론 수요자인 재학생, 학부모, 졸업생, 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교육과정정책위원회 연구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이행토록 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우리대학의 여건이 적절하게 반영된 중장기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사무분장규정」, 「교육과정관련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정책위원회 기능이 교육혁신센터에 편제되어 있음은 물론 규정상 절차 중 한 과정으로 적시하여 교육과정 설치 관리(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교육과정정책위원회의 연구 및 정책 수립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있는데도, - 직제개편 및 사무분장에 따라 교과과정정책위원회의 주관부서가 변경된 이후 교과과정정책위원회의 구체적 활동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감사대상기간 중 2021학년도 교육혁신센터의 교육과정정책위원회 개최·운영 사례와 정책수립 상정 사례가 없고, 동사안에 대한 수업팀의 교과과정운영위원회 상정(교과과정정책위원회 연구 및 정책수립 상정)한 사실이 없음	<통보> 교육혁신센터의 교육과정정책위원회 연구 및 정책수립 결과가 학사일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수업팀에 반드시 전달되어, 교과과정 개편에 반영 및 활용을 통하여 교과과정위원회에 상정,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 및 제도 보완(정책연구결과 상정 정례화·의무화)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2	OO팀	학적변동(휴학, 자퇴) 절차 중 제출기한 및 처리기한 부재	- 본교 「평택대학교 학칙」 제8장 제23조 내지 제27조, 「평택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8장 제30조 내지 제36조,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제9항을 통해 재학생 등이 휴학, 자퇴에 관한 일반절차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고 통합정보시스템 내에 진행절차와 의견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를 위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으나 - 휴학, 자퇴 신청서 접수기한 및 처리기한(데드라인)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적시하지 않아, 신청자로 하여금 승인완료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매년 4월 1일자, 10월 1일자 재학생 현황 보고 이후 다수의 자퇴 혹은 휴학자 발생 사실이 있음	<통보> 관련 규정, 세칙, 지침에 적용가능한 접수기한 및 처리기한 구체적 반영 필요
3	OO팀	학사경고자 지도교수 면담 시행 미흡	- 본교 「평택대학교 학칙」 제40조, 「평택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0조의1과 2016년 2월 26일 제정된 「학사경고자 지도에 관한 규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근거하여 교무처장은 매학기 시작 전에 직전 학기의 학사경고자 명단을 해당 학부(과)에 통보하고 학부(과)장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에 대해 2회 이상 이수학점, 출석관리, 수업태도, 학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되 학사경고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내용과 상담 및 지도를 위한 노력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감사대상년도 학사경고자에 대한 면담과정에서 상담일자와 성적부진이유, 앞으로의 각오 등 구체적 상담 내용을 미기입하거나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통보> 「학사경고자 지도에 관한 규정」에서 적시하고 있는 필수 상담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 보완 및 학사경고자에 대한 2회 이상의 상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4	OO센터	규정 관리 미흡	규정류 관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규정이 관리되어야 함에도, 현재 교육혁신센터 규정이 2개로 이전 문서인 HiT 교육혁신 센터 규정(180219개정)의 관리(폐기 등)가 필요함	<통보> 교육혁신센터 규정 관리(폐기 등)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5	OO센터	교육수요만족도조사 환류관리 미흡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규정 제9조(환류체계 관리) 제3항에 따라 조사 담당부서는 환류과제를 점검하고 성과 분석하여 보고하며 차기년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계획수립에 반영해야함에도, 환류과제의 집행금액 총 480,977,251원에 대한 세부 결과보고서(내용)가 없고, 환류 과제 전체 수 45개 중 이행 24개 미이행 21개인데 미이행에 대한 조치가 없으며, 환류 과제에 대한 집행금액이 학과별로 큰 차이(0원 ~ 12,600,000원)가 있는 등 환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통보> 환류과제 채택 및 예산에 대한 교육수요자만족도 조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요구되고, 과제 미이행에 대한 조치가 필요
6	OO센터	교육수요만족도조사 결과활용 미흡	교육수요자만족도조사 규정 제14조(결과활용)에 따라 조사 결과는 학부(과) 평가, 부서평가, 학부(과) 및 부서 예산편성 인센티브 등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조사결과를 인센티브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불가	<통보> 인센티브에 활용하기 위한 예산 요청·편성 필요
7	OO센터	교육혁신센터 수행 업무 중 일부 미시행	교육혁신센터 규정 제3조 제5호에 따라 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역량강화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학습프로그램, 학습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사고 및 컴퓨팅적 사고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에도,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예: 학습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통보> 학습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8	OO센터	기자재 관리·운영 개선	교수학습지원센터 규정 제3조(업무) 제3호 및 제8호 등에 따라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기자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기자재 대여가 일부 학과에 집중되어 있고, 대여 가능한 기자재의 현황을 표기한 목록이 없으며, 보유 기자재에 대한 고유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대여되고 있음	<통보> 각 학과에 장비 대여가 가능하며 가능한 목록과 함께 홍보 권고 또한 보유기자재에 대한 고유번호 등을 지정하여 관리 요망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9	OO팀	교원 신규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미흡	교원 인사규정 제7조(신규채용) 제3항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법정교원 수,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채용분야 및 인원을 확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서 및 회의록에서 해당 내용의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채용분야 및 인원이 확정되었음	<통보>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법정 교원수,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도록 절차 개선
10	OO팀	교원 신규채용 시 제척·회피 대상 신고절차 미운영	교원 인사규정 제12조(제척·회피)에 따른 제척·회피 대상 신고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임용한 바 있음	<통보> 교원 신규 채용 시 제척·회피 대상 신고 절차를 운영
11	OO팀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미구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에 따라 대학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두어야함에도 관련 심사를 진행하는 위원회가 없음	<통보> 관련 법령에 따라 본교 규정을 개정,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12	OO팀	교원 신규채용 시 임용결격사유 조회 등 미 실시	교원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성범죄경력 등의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용한 바 있음	<통보>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 실시자, 성범죄 경력 미확인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13	OO팀	교원 신규채 용 시 특정 대학의 학사 학위 소지자 확인 절차 미운영	교원 인사규정 제7조(신규채용) 제4항에 따라 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규 교원의 채용 절차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통보>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채용 공고 시 현재 교원의 구성에 따라 채용이 불가한 특정대학을 표기 하여 사전에 해당자의 지원을 방지하도록 공고할 것을 권고
14	OO팀	겸직허가 기 준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원 인사규정 제48조(겸직)에서는 타 기관에 전속하여 업무를 겸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세부적인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통보>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15	OO팀	교원 복무 점검 미실시	교원 준칙 제2조(출근일 준수), 교원 준칙 제4조(국내외 여행), 교원인사규정 제48조(겸직)에 대한 준수여부의 확인·점검 미실시	<통보> 국내외 여행, 겸직 미허가 타 대학 출강,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등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확인·점검 실시(미신고하여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본인구책)
16	OO팀	교수회의 및 학교 전체 행사 참석 여부 확인 미실시 등	교원 준칙 제7조(교수회의)에 따라 전임교원은 모든 교수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불참사유를 밝혀 교무처장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무단 불참 시에는 1회 불참을 2시간 휴강한 것으로 평정해야 하고, 교원 준칙 제8조(학교 전체 행사 참석)에 따라 거교적인 모든 행사에 전임교원은 참석하여야 하고 무단 불참하는 경우에는 4시간 휴강한 것으로 평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수회의 및 학교 전체 행사의 참석 여부를 미확인하였으며, 일부 확인한 경우에도 평정에 반영하지 않음	<통보> 교수회의 및 학교전체 행사의 참석여부를 확인 하거나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규정을 개정 또한 교수회의, 학교 전체 행사에 어떤 행사가 포함되는 것인지 규정(개정), 안내가 필요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17	00팀	직원 신규 채용 시 임용 결격사유 조회 등 미 실시	채용 전 성범죄 경력 검증 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음. 채용 후 교육부 요청에 의한 점검을 통해 성범죄자가 채용되지 않았음이 확인 되었으나, 채용 전 성범죄 경력의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 직원 채용의 경우 별도 학위 검증 절차가 없음.	<통보> 임용결격사유 조회 미 실시자, 성범죄 경력 미확인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18	00팀	취업규칙 필수사항 미 기재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의 [15장. 안전보건]의 필수 조항 중 일부가 본교 취업규칙에 기술되어 있지 않음.	<통보>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의 [15장. 안전보건]의 필수 조항을 재검토한 후 본교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을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함.

연번	대상부서	건 명	점검 시 지적사항	시정사항
19	OO팀	복무관리 운영 미흡	교직원복무규정 제2장 출근 및 퇴근에 따라 교직원은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무분장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총괄지원팀은 직원복무관리를 수행해야 함에도, 출·퇴근 시 개별 발급된 카드 및 근태관리기를 통한 근태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근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점검, 보고하지 않음	<통보> 구축된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현황 분석 보고 및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20	OO팀	위험관리 및 재해복구 미흡	[2022년 사립대 정보보안 수준 진단] 결과 매우 미흡으로 판정된 “위험관리 및 재해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노력 미흡	<통보>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담당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권고함.